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제정 2020.06.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학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 한다.

제4조(정보공개 책임관의 지정)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교육지원처로 한다.

② 본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처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 한다.

제5조(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방법)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는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되,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 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시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한다.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을 따른다.

제7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조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